

전문가가 성폭력 방지 정책을 진단하다

I. 개요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성폭력 범죄는 증가추세를 보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12.6.4 ~ 6.11(일주일) 간 성폭력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은 학자 및 연구자 13명, 여성단체 관계자 10명, 공무원 10명, 유관단체 17명 등 총 5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됨.
- 성폭력 범죄 및 방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추진방향을 간략히 제시함.

II.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 성폭력 범죄

- 성폭력 범죄는 2000년 10,189건에서 2009년에는 16,156건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10%가 재범으로 나타남(대검찰청 2010).
- 정부는 2010년에 성폭력특별법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리·개정하여 성폭력의

예방, 피해자 보호, 기해자 처벌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2004년부터 매 3년마다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함.
-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에서 발생하는 여성·아동 폭력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성폭력 피해율

- 평생 기간 동안(태어나서 조사시점까지 모든 시기에 걸쳐) 일반 성인 인구 중 1.1%가 강간 피해, 즉 성인 1천명당 11명이 평생 1회 이상의 강간 피해를 경험함.
- 여성의 평생 성폭력 피해율중 강간 피해는 1.4%로, 성인 여성 1천명당 14명이 평생 1회 이상의 강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평생 1회 이상의 피해 경험률중 강간미수 피해는 성인 여성의 3.6%, 심한 성추행 피해는 7.3%, 가벼운 성추행 피해는 29.0%로 나타남 (표 1).
- 성별에 따라 피해경험을 살펴볼 때, 음란 전화 경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함.
- 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보다는 아는 사람 혹은 가족 및 친척이 성폭력 기해자인 경우가 많음. 특히 강간,

강간미수, 심한 성추행은 그러한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광고에 대한 노출 증가 등을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인식함(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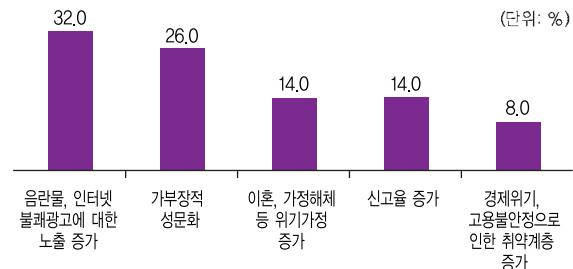
III. 성폭력 방지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이슈 #1

성폭력 범죄 증가에 대한 인식

▣ 성폭력 범죄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 연간 성폭력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음란물, 인터넷 불쾌광고에 대한 노출 증가' 32.0%, 그 다음으로는 '기부장적 성문화' 26.0%, '이혼, 가정해체 등 위기기정 증가' 14.0%, '신고율 증가'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는 학자/연구자는 '신고율 증가', 여성 단체는 '기부장적 성문화', 공무원은 '이혼, 가정해체 등 위기기정 증가', 유관단체는 '음란물, 인터넷 불쾌광고에 대한 노출 증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림 1〉 성폭력 범죄 증가 이유

▣ 성폭력 범죄 신고율이 낮은 이유

- 성폭력 범죄 신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는 '신고자의 신원보호가 안되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수치심 때문에' 42.0%, '피해자 또는 주변인이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8.0%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는 학자/연구자 및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보호가 안되기 때문에'(각각 61.5%, 60%), 유관단체는 '피해자의 수치심 때문에'(52.9%)라는 이유로 범죄 신고율이 낮다고 응답함.

〈표 1〉 평생기간 동안 성폭력 피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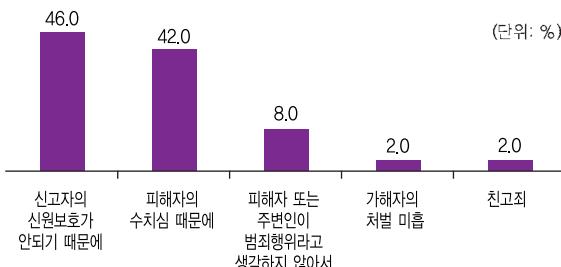
구분	강간	강간미수	심한 성추행	가벼운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등	성기노출	스토킹	분석대상수
전체피해율	1.1	2.2	4.7	18.6	10.3	55.5	23.7	4.7	(2,200)
여성피해율	1.4	3.6	7.3	29.0	15.7	52.7	34.7	6.1	(1,583)
남성피해율	0.7	0.7	1.9	7.2	4.3	58.6	11.8	3.1	(617)

출처 여성가족부(2010.12). 「2010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주요결과」. p. 3. 전국 200개 조사구의 2,200가구 조사 결과.

〈표 2〉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사례수	음란물, 인터넷 불쾌광고에 대한 노출 증가	기부장적 성문화	이혼, 가정해체 등 위기기정 증가	신고율 증가	경제위기,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취약계층 증가	학교내 성교육 미흡	가정내 성교육 미흡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
전체	50 (100.0)	16 (32.0)	13 (26.0)	7 (14.0)	7 (14.0)	4 (8.0)	1 (2.0)	1 (2.0)	1 (2.0)
학자/ 연구자	13 (100.0)	3 (23.1)	3 (23.1)	1 (7.7)	5 (38.5)	1 (7.7)	0 (0.0)	0 (0.0)	0 (0.0)
여성단체	10 (100.0)	3 (30.0)	6 (60.0)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공무원	10 (100.0)	2 (20.0)	0 (0.0)	4 (40.0)	1 (10.0)	2 (20.0)	1 (10.0)	0 (0.0)	0 (0.0)
유관단체	17 (100.0)	8 (47.1)	4 (23.5)	2 (11.8)	0 (0.0)	1 (5.9)	0 (0.0)	1 (5.9)	1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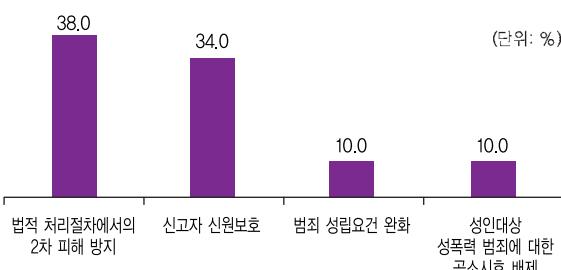
주 : 괄호안은 비율(%)임



〈그림 2〉 성폭력 범죄 신고율이 낮은 이유

▣ 성폭력 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 성폭력 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법적 처리절차에서의 2차 피해방지'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신고자 신원 보호' 34.0%, '범죄 성립요건 완화' 10.0%,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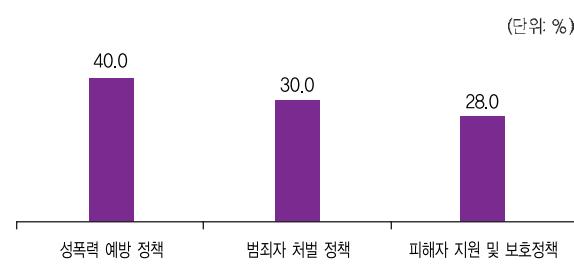
〈그림 3〉 성폭력 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이슈 #2

성폭력 방지 정책

▣ 성폭력 방지 정책 중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 성폭력 방지 정책 중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은 '성폭력 예방정책'이 40.0%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는 '범죄자 처벌 정책' 30.0%, '피해자 지원 및 보호정책' 2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에도 성폭력 예방정책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4〉 성폭력 방지 정책 중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표 3〉 응답자 유형별 성폭력 방지 정책 중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사례수	성폭력 예방 정책	범죄자 처벌 정책	피해자 지원 및 보호정책	그때 그때 다르다
전체	50 (100.0)	20 (40.0)	15 (30.0)	14 (28.0)	1 (2.0)
학자/연구자	13 (100.0)	6 (46.2)	3 (23.1)	3 (23.1)	1 (7.7)
여성단체	10 (100.0)	5 (50.0)	3 (30.0)	2 (20.0)	0 (0.0)
공무원	10 (100.0)	4 (40.0)	3 (30.0)	3 (30.0)	0 (0.0)
유관단체	17 (100.0)	5 (29.4)	6 (35.3)	6 (35.3)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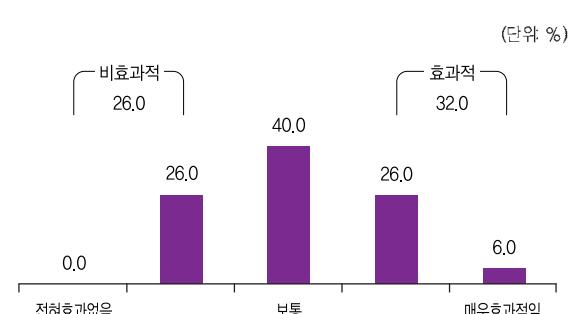
주 : 괄호안은 비율(%)임.

이슈 #3

성폭력 방지 정책 효과성 평가 : 예방정책 부문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의 효과성 평가에서 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32.0%(매우 효과적 6.0% +



〈그림 5〉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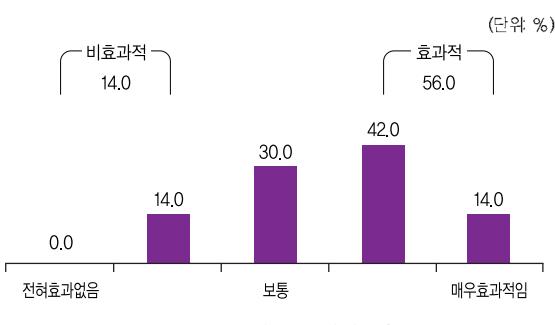
1) 성폭력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 후 주변으로부터 겪는 고통과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통틀어 이르는 말

효과적 26.0%), 비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26.0%(효과 없음 26.0%)로 긍정적 응답률이 다소 높음.

- 응답자 유형별로는 효과적이라는 긍정적 응답률이 공무원 60.0%, 유관단체 53%로 학자/연구자, 여성단체 집단이 10%미만의 긍정적 응답률을 보인 것과 대조적임.

▣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 방지정책으로서 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에 대하여는 긍정적 응답률이 56.0%(매우 효과적 14.0% + 효과적인 편 42.0%)임. 비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14.0%로 대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성폭력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응답자 유형별로는 긍정적 응답률이 공무원 70.0%, 유관단체 76.4%로 학자/연구자 38.5%, 여성단체 30.0%에 비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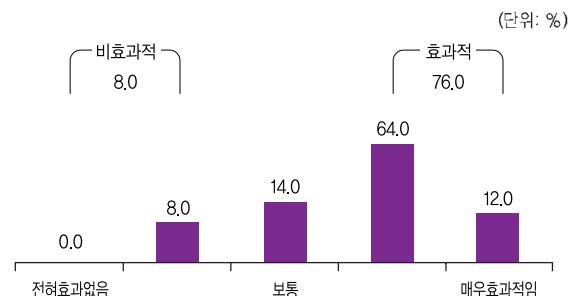
〈그림 6〉 성폭력 예방교육

이슈 #4

성폭력 방지 정책 효과성 평가 : 피해자 지원 및 보호정책

▣ 성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및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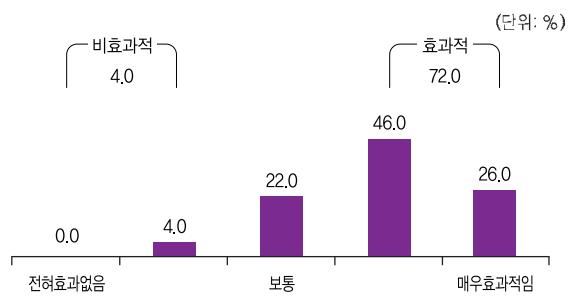
- 성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및 지원체계의 효과성에 대하여는 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이 76.0%(매우 효과적 12.0% + 효과적 64.0%)로 나타남. 비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8.0%임.
- 응답자 유형별로는 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공무원 90.0%, 유관단체 94.2%, 여성단체 70.0%, 학자/연구자 46.2%로 학자/연구자 집단이 성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및 지원체계의 효과성에 대하여 다소 낮은 평가를 함.



〈그림 7〉 성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및 지원체계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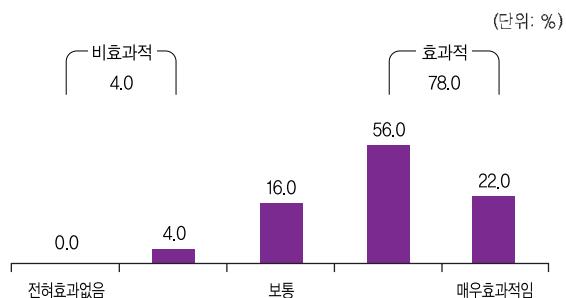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는 긍정적 응답률이 72.0%(매우 효과적 26.0% + 효과적 46.0%)로 나타남. 비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4.0%임.
- 응답자 유형별로는 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이 공무원 90.0%, 유관단체 82.3%로 여성단체 60.0%, 학자/연구자 53.9%에 비하여 긍정적 평가가 다소 높음.



〈그림 8〉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운영

▣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의 연계

-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의 효과성 평가에 대하여는 긍정적 응답률이 78.0%(매우 효과적 22.0% + 효과적 56.0%)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는 긍정적 평가를 한 응답률이 공무



〈그림 9〉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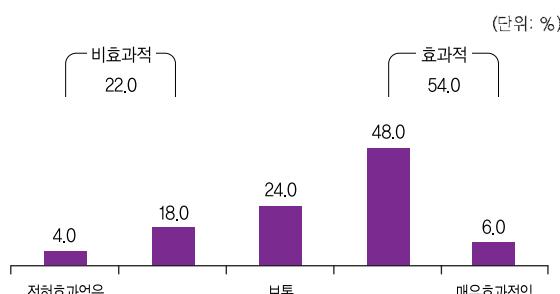
원 90.0%, 유관단체 88.2%, 학자/연구자 69.2%, 여성단체 60.0% 순으로 나타남.

이슈 #5

성폭력 방지 정책 효과성 평가: 기해자 처벌 정책

전자발찌제도

- 전자발찌제도의 정책 효과성에 대하여 긍정적 응답률은 54.0%(매우 효과적 6.0% + 효과적 48.0%)로 나타남 비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22.0%(전혀 효과없음 4.0% + 비효과적 18.0%)로 앞에서 살펴 본 여타 정책에 비하여 비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는 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이 공무원 80.0%, 유관단체 64.7%, 학자/연구자 46.2%, 여성 단체 20.0%로 긍정적 평가에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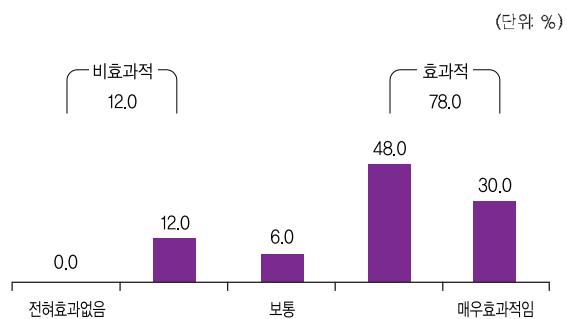
〈그림 10〉 전자발찌제도

(전혀 효과없음 6.0% + 비효과적 20.0%)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는 긍정적 평기를 한 응답률이 공무원 90.0%, 유관단체 70.6%, 학자/연구자 30.8%, 여성 단체 20.0% 순으로 나타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정책 효과성에 대하여 긍정적 응답률이 78.0%(매우 효과적 30.0% + 효과적 48.0%)로 나타남. 비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12.0%임.
- 응답자 유형별로는 긍정적 평기를 한 응답률이 공무원 100.0%, 유관단체 88.3%, 학자/연구자 69.2%, 여성 단체 50.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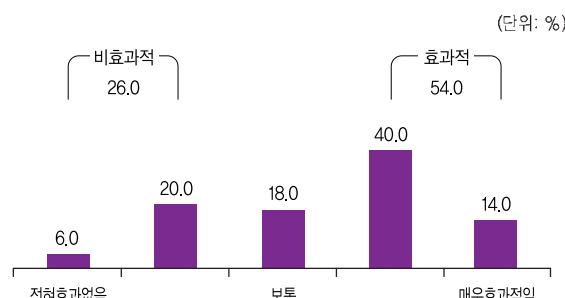
〈그림 1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이슈 #6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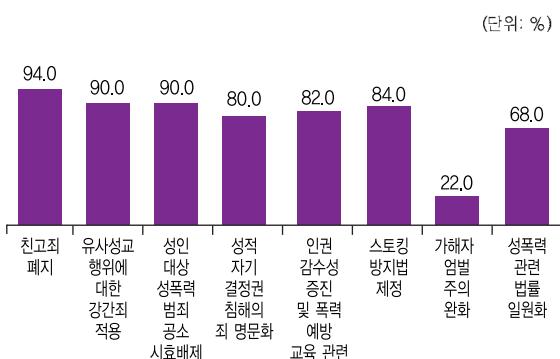
화학적 거세제도

- 화학적 거세제도의 정책 효과성에 대하여는 긍정적 응답률이 54.0%(매우 효과적 14.0% + 효과적 40.0%)로 나타남. 비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이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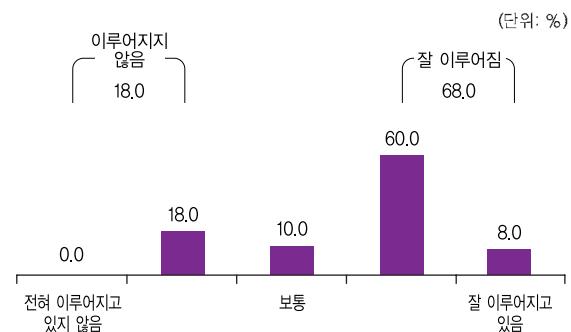
〈그림 11〉 화학적 거세제도

- 현재 성폭력 방지 정책의 논의 대상인 여러 정책에 대하여 19대 국회 처리의 친반을 물음. 친고죄폐지가 처리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94.0%(전적 찬성 66.0% + 찬성 28.0%)임.
-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강간죄 적용이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90.0%(전적 찬성 56.0% + 찬성 34.0%)임.
-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가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90.0%(전적 찬성 60.0% + 찬성 30.0%)임.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 명문화가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응답률은 80.0%(전적 찬성 46.0% + 찬성 34.0%)임.



〈그림 13〉 19대 국회 처리의 찬성을

- 인권감수성 증진 및 폭력 예방 교육 관련 법률 제정이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82.0%(전적 찬성 50.0% + 찬성 32.0%)임.
- 스토킹 방지법 제정이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84.0%(전적 찬성 52.0% + 찬성 32.0%)임.
- 가해자 엄벌주의 완화의 방향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22.0%(전적 찬성 10.0% + 찬성 12.0%)이고,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64.0%(전혀 찬성하지 않음 20.0% + 찬성하지 않는 편 44.0%)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남. 가해자 처벌의 형량 등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 성폭력 관련 법률 일원화가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68.0%(전적 찬성 32.0% + 찬성 36.0%),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12.0%임.



〈그림 14〉 정부와 NGO의 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 협력, 공조체제

▣ 정부와 NGO간 협력, 공조체제를 위해 필요한 것

- 정부와 NGO간 협력 및 공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 물어본 결과, 기관간 연계성 회복, NGO에 대한 인적 및 재정적 지원 확대, 피해자 이해 및 지원에 기반한 제도 운영 등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의견을 구분할 수 있었음

✚ 기관간 연계성 회복

- 정부와 NGO 간 연락체계 정비 및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 회복
- NGO에 대한 사회적 인준 및 법적 지위 보장
- 단체와 경찰 및 법무부와의 관계 재정립

✚ NGO에 대한 인적 및 재정적 지원 확대

-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마련 및 처우 개선
-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 지원
-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험 축적 및 재교육 시스템 마련

✚ 피해자 이해 및 지원에 기반한 제도 운영

- 피해자와 NGO의 요구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법무부 등 정부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정부 부처 이기주의 지양

이수 #7

성폭력 방지 정책 거버넌스

▣ 정부와 NGO의 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 협력, 공조체제

- 정부와 NGO의 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의 협력, 공조체제에 대하여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률은 68.0% (잘 이루어지고 있음 8.0% +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 60.0%)로 높게 나타남. 이에 대하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부정적 응답을 한 비율은 18.0%임.
- 응답자 유형별로는 긍정적 응답률이 공무원 90.0%, 여성단체 70.0%, 유관단체 64.7%, 학자/연구자 53.8% 순으로 나타남.

IV. 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 과제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 개선

-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증가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신고율 증가를 들고 있기는 하나(13명의 학자 및 연구자 중 5명), 성폭력 범죄는 신고자 신원에 대한 보호장치가 불완전하고(46.0%), 피해자 본인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서 가지는 수치심이 커서(42.0%), 여타 범죄와 비교할 경우 여전히 신고율이 낮은 상태임. 또한 피해자 또는 주변사람들이 성폭력 범죄를 사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는 태도가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신고율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적 처리 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38.0%), '신고자 신원보호'(34.0%) 부분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인권 감수성 제고, 성폭력 범죄 발생 시 경찰 등 당국의 초기 대응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지인에 의한 범죄가 많다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고자의 신분노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적 처리절차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2. 성폭력 예방 정책 강화

- 성폭력 방지 정책은 예방, 처벌, 보호 부문이 상호 보완적으로 집행되어야 힘이 원칙이기는 하나,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성폭력 예방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함.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성폭력 방지 효과에 대해 과반수 이상(56.0%)이 효과가 있으며, 대다수가 19대 국회에서 '인권감수성 증진 및 폭력예방 교육 관련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82.0%)고 응답하였음.
- 응답자 유형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문가들은 '음란물, 인터넷 불쾌광고에 대한 노출 증가'(32.0%), '기부장적 성문화'(26.0%), 이혼, 가정해체 등 위기

가정 증가'(14.0%), '신고율 증가(14.0%)' 등을 성폭력 범죄 증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여러 가지 종류의 미디어를 통해, 원하지 않더라도 제공받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음란물의 사회적 유통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됨. 이와 더불어 기부장적 성문화로 인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성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3.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 활성화

- 여성가족부는 지역별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축 계획을 수립('08.5)하여 구성 · 운영지침을 통보('08.6)하였고, 대상지역을 전국 시 · 군 · 구로 확대함으로써 전국 지자체에서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이에 대한 사업 효과성 평가가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이 지역안전망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운영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4.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다각화

- 최근 도입된 성폭력 기해자 관련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78.0%)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전자발찌제도(54.0%)와 회학적 거세제도(54.0%)도 효과적이며, '기해자 엄벌주의 완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로 나타나는 등 대체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음.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듯이 성폭력 범죄가 재범 발생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전자발찌 제도, 회학적 거세제도 등 강력한 기해자 처벌 제도의 집행과 함께 재범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자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확대, 성범죄 재소자와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교육 강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적 · 제도적 여건의 정비를 위한 19대 국회의 관심 제고

- 성폭력 방지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19대 국회가 처리하기를 바라는 정책은 친고죄 폐지,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강간죄 적용, 성인대상 성 폭력 범죄 공소시효 바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 명문화, 인권 김수성 증진 및 폭력 예방 교육관련 법률 제정, 스토킹 방지법 제정 등으로,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은 80%를 넘고 있음.

6. 성폭력 방지 정책 거버넌스 강화

-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정부와 NGO의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성 폭력 방지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 및 공조 체제에 대하여 공무원의 90%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여성단체, 유관단체, 학자/연구자의 경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7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정부는 보다 더 협력적인 공조체제를 이루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성폭력 방지 관련 법률 소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목적 :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 ·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죄
- 성폭력 실태조사의무: 여성기족부 장관은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지원,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이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다만, 입소한 사람이 미성년자로서 친족에 의한 피해자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18세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성폭력의 정의: 1)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회반포 등, 음회제조 등 및 공연음란의 죄, 2) 악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영리 등을 위한 악취, 유인, 매매 등,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강도 강간, 미수범까지의 죄
- 고소기간: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함.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함.
-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함. 2)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됨. 3)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예외를 적용함.
-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인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함.